이 사 회 규 정

2023. 03. 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셀트리온(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회사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회장을 역임한 분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명예회장의 보수 및 기타 예우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③ 이사회에는 총 이사수의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단, 의장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의장으로 선임하되 공동의장 중 1인을 선임공동의장으로 정한다.

② 의장 또는 공동의장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정한 각각의 기간 중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 또는 선임공동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다른 공동의장(공동의장이 선임된 경우에 한함),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순으로 대행하되 사내이사는 사장, 수석부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의 순으로 대행하며 복수인 경우 및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연장자가 우선한다.

④ 의장 또는 선임공동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일정한 날을 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 또는 선임공동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 또는 선임공동의장이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의 대행순서를 준용한다.

② 각 이사는 제1항에서 정한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집권자는 7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청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이사회 일자를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소집하여 회의를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이사들에게 의해 발생된 비용은 회사가 지급한다. 또한 회의실의 임차, 번역 등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제415조의2(감사위원회)제3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출석이사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부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나눈다.

②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제11조(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주주총회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단, 감사위원의 해임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 한한다)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제12조(경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경영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연간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의 변경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회 의장 또는 공동의장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6.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8.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9.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개정 및 폐지
10.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 또는 폐지
11.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제13조(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재무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또는 시설증설
2.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2.5% 이상의 공급계약의 체결
3. 자산총액의 2.5%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자금 차입 또는 연장
12.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면제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제14조(이사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이사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에 대한 승인
3. 이사의 경업 및 타회사의 임원 겸임에 대한 승인

제15조(기타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4. 안전보건계획의 승인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6.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8조(관계인의 출석)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이사가 아닌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4장 보 칙

제19조(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의사록)

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22조(사후승인)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부속실 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이사회 운영 실무부서의 책임자가 되며 회의의 소집통고, 의사록의 작성 등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부 칙 (2008. 7. 17.)

이 규정은 2008. 7.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4.)

이 규정은 2008. 12.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7.)

이 규정은 2014. 3.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6.)

이 규정은 2015. 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1.)

이 규정은 2015. 3.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5.)

이 규정은 2016. 3.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3.)

이 규정은 2018. 3.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2.)

이 규정은 2021. 2. 2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은 「자본시장법」 부칙(2020.2.4 제16958호) 제2조에 따라 그 유예기간인 2022. 8. 4. 이내에 규정 내용에 합치되도록 한다.

부 칙 (2022. 1. 24.)

이 규정은 2022. 1.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16.)

이 규정은 2022. 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8.)

이 규정은 2023. 3. 28.부터 시행한다.